

# UCP600에서 확인은행의 지위와 책임

The Status and Responsibility of the Confirming Bank under UCP600

박세운(Sae-Woon Park)

창원대학교 경영학과(주저자)

이선희(Sun-Hae Lee)

창원대학교 경영학과(교신저자)

## 목 차

I. 서론	V. 결론
II. 신용장 확인의 의의와 역사	참고문헌
III. 판례 분석	Abstract
IV. 실무상 유의점	

## 국문초록

확인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를 하면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약속한다. 그러나 신용장 사기가 명백한 경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마찬가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즉 확인은행이 서류 위조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은행이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개설은행이 발견한 경우 확인은행이 수익자 또는 지정은행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UCP600에서 서류 접수 후 5은행영업일이 경과하면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인은행이 수익자의 하자 있는 서류의 용인을 개설은행에 요구하여, 개설은행이 이것을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확인은행은 확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부 매입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인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확인은행은 즉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은행이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기한부신용장에서 연지급 또는 인수신용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수익자 입장에서 신용장 확인을 받더라도 서류 일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금회수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 확인보다는 상환은행의 상환확약이 더 안전하다.

주제어 : 확인은행, 지정은행, 무권 확인

## I. 서론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은 수출상과 수입상에게 대금지급과 계약이행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신용장은 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편이며 주요한 대금결제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수익자는 자신의 소재지 은행과 거래를 함으로써, 개설은행의 신용위험 또는 국별 위험(country risk)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개설은행 이외의 수익자 소재지 은행이 추가적으로 대금지급을 약속하기를 원한다.

특히 최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무역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도상국 은행의 신용장 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은행 또는 수입국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서 다른 은행이 이 신용장에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파산 또는 개설은행 소재국가의 외환사정 악화로 대금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신용장대금을 대신 지급하여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확인은행의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확인은행의 지급위험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은행인 외환은행을 비롯하여 Bank of China 등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이 GTFP(Global Trade Finance Program) confirming bank로 활동하고 있다.<sup>1)</sup> 또한 국제금융공사의 GTFP에 참여하지 않고 신용장을 확인하는 은행도 있다.

확인은행은 수익자 또는 지정은행의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입의 의무를 지닌다. UCP600 제8조에서는 확인은행의 수익자와 또 다른 지정은행에 대한 약속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확인은행의 약속에 대하여 UCP600, ISP98 등에서는 확인은행의 지위를 개설은행과 동일하게 보고 있으나, 확인은행이 개설은행, 지정은행 또는 수익자와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 확인은행의 지위와 책임의 한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확인은행에 관하여는 김용복(1976), 이대우(2008), 이천수(1999,2004), 장홍훈(2000), 박형원·김동윤(2011) 등의 선행연구가 있다. 김용복(1976)의 연구는 UCP290(1974)에 대한 연구로 신용장 확인에 대한 개념적 연구에 그치고 있다. 이대우(2008)의 연구는 UCP500에서 인수신용장에서의 확인은행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판례분석이고, 이천수의 연구는 모두 UCP500에 대한 것으로 1999년의 연구는 상환확약과 확인은행의 확인을 비교한 것이고 2004년의 연구는 무권 확인에 대한 연구이다. 장홍훈(2000)과 박형원·김동윤(2011)의 연구는 확인은행의 법적 지위와 책임의 한계

1) www.ifc.org

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UCP600 개정 전의 연구이고, UCP600에 대한 박원형·김동윤(2011)의 연구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비교 한 것으로 확인은행의 지위와 책임의 범위에 대한 연구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UCP600의 개정을 반영한 최신 판례와 ICC Opinion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UCP600 개정사항 및 최신 ICC Opinion,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확인은행의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신용장 확인과 관련된 신용장 당사자에 대한 실무상 유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신용장 확인의 의의와 역사

### 1. 신용장 확인의 개념과 수익자에 대한 편익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확약이다. 수익자는 일반적으로 개설의뢰인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신용장거래에서는 개설은행에 대금지급을 요구한다. 따라서 수익자는 개설은행의 파산 또는 개설은행 소재국의 지급불능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개설은행의 신용장거래의 전문성, 평판 위험도 또한 발생할 수 있다.<sup>2)</sup> 이러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거나, 다른 형태의 대체적인 지급보증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나<sup>3)</sup>, 대부분의 경우 개설은행의 확약을 다른 은행이 추가적으로 확인(confirm)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용장 확인은 수익자에게 개설은행 이외의 대금회수의 또 다른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확인은행이 수출상 소재국에 위치하고 있다면 수익자는 외국법 적용에 따른 위험도 피할 수 있다.<sup>4)</sup> 수출상이 확인신용장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Texas Trading & Milling Corp. v. H.I.T. Corp.<sup>5)</sup> 사건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법원은 신용장 확인은 상업분쟁에서 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에 대한 편향 가능성으로부터 수익자를 보호해 준다고 하였다.<sup>6)</sup> 개설은행은

2) 이러한 위험의 예는 ICC Opinion TA 524(UCP500)에 언급되어 있다.

3) 상환은행의 상환확약(reimbursement undertaking)을 수익자가 받게 되면 대금회수의 안정성이 확인신용장보다 높다. (URR725 제9조)

4) James E. Byrne, UCP600: An analytical commenta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2010, p. 390.

5) No.84 Cir. 3776 (LLS) (S.D.N.Y. Sept 3,1986)

6) Ellen S. Levine, Third-party interaction with letter of credit, A Practical Guide to Letter of Credit edited by Charles E. Aster, Executive Enterprises Publications Co. Inc., 1990, p. 186.

수익자보다도 자기의 고객인 개설의뢰인의 입장에서 서류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선진국 은행보다도 개도국 은행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수익자 소재지에 위치한 확인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입장보다는 수익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다.

## 2. 확인신용장의 역사

비록 현재에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대하여 확인은행이 그의 확약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지만, 확인신용장이 신용장의 초기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되기 전인 20세기 초에 영국은행은 확인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확인은행의 의미에 대하여 현재와는 다른 혼란스러운 개념을 가졌다. 이를테면 영국은행에서는 “unconfirmed”는 취소가능(revocable)이라는 의미를 가졌고, “confirmed”는 취소불능(irrevocable)이라는 의미를 가졌다.<sup>7)</sup> 즉 영국에서는 irrevocable credit와 confirmed credit는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영국의 은행 전문가는 외국의 개설은행은 업계에 잘 알려져 있으므로 수출지 은행에 의한 확인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 은행의 관행은 영국 은행의 관행과 달랐다. 개설은행의 확약에 제3의 은행의 확약이 추가된 신용장을 confirmed credit라고 부르는 관행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개설은행이 지급거절을 하더라도 통지은행이 무조건 지급을 하겠다는 보증을 하면 그 신용장은 대금지급이 더 확실한 신용장이 된다는 것으로, 그러한 신용장을 confirmed export letter of credit라고 불렀다. 미국의 무역업자는 물론이고, 학자들도 이것을 지지하였다.<sup>8)</sup>

그 당시 영국은 confirmed credit에 대하여 미국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 대륙에서도 이와 같은 미국식 confirmed credit의 이용가치가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사용이 확대되었다. 또한 1933년에 처음 제정된 신용장통일규칙(UCP82) 제7조에 미국식 확인신용장을 규정하게 되어, 이것을 채택한 유럽대륙국가에 적용되었다. 특히 이것이 세계적 관행이 된 결정적 계기는 1962년 영국 및 그 밖의 많은 은행들이 신용장통일규칙(UCP222)을 채택하면서 부터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 발생한 확인의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1933년의 UCP82 제7조<sup>9)</sup>에서는 개설은행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통지은행의 약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확인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확인을 한 은행은

7) W. Ward, American Commercial Credits, The Ronald Press Company, 1922, p. 22.

8) 小峯 登, 『1974年 信用狀統一規則(上)』, 外國爲替貿易研究會, 1977, p. 232.

9) UCP82(1933) Article 7

An advising bank may be called upon by opening bank to confirm an irrevocable credit. In this case, the advising bank makes itself responsible to the beneficiary as from the date on which it gives confirmation.

확인을 한 일자로부터 수익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확인은행의 의무를 명확하게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확인의 개념은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확인은행이라는 용어는 1951년의 UCP151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이후의 개정에서도 확인은행의 의무는 동일하게 규정되었다. 1951년의 UCP151과 1962년의 UCP222<sup>10)</sup>에서는 “개설은행이 다른 은행에 자행의 취소불능신용장을 확인할 권한을 부여하고, 후자가 그렇게 하면 확인은행이 확인을 추가한 시점으로부터 확인은행의 약정이 성립된다”고 규정하여 개설은행과 확인은행과의 관계를 수권의 각도에서 규정하였다. 1974년의 UCP290부터는 개설은행의 제1차 확약에 추가하여, 확인은행의 제2차 확약이 중첩적으로 부가되어 양자의 확약이 별도의 독립적인 확정적 채무라는 것임을 확실히 하였다.

1977년 ICC의 의견은 개설은행이 “We issue our irrevocable and confirmed credit”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개설은행이 다른 은행에 신용장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문구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sup>11)</sup> 또한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통지 요청을 하면서 “We shall pay your claim”이라고 한 것은 통지은행의 상환 요청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것이지 통지은행에 신용장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sup>12)</sup>

자기 은행의 다른 지점이 개설한 신용장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신용장거래에서는 외국의 지점은 다른 은행으로 취급되므로<sup>13)</sup> 동일 은행이지만 다른 국가에 지점이 있는 경우, 한 국가 내의 지점은 개설은행이 되고 또 다른 국가의 지점은 확인은행이 될 수 있다. 특히 신용장 개설 영업점이 국별 위험이 아주 높은 국가에 위치한 경우에 그러하다.<sup>14)</sup>

### 3. 확인은행의 권리와 의무

확인은행이란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확인을 한 은행을 말한다. 묵시적 확인을 한 은행은 개설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이 없기 때문에 UCP600에서의 확인이 아니다. 비은행금융기관이 신용장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sup>15)</sup> UCP600에서는 “확인은행”이라는 용

10) UCP222(1982)

when an issuing bank authorises another bank to confirm its irrevocable credit and the latter does so, such confirmation constitutes a definite undertaking on the part of the confirming bank.

11) ICC Opinion R.3(UCP290) 토의과정에서 일부 전문가가 이것을 신용장의 확인 요청이라고 주장하였다.

12) ICC Opinion R.4(UCP290) 토의과정에서 일부 전문가가 일부 은행은 이것을 신용장의 확인 요청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3) King Tak Fung, Expert commentary, *Documentary Credit Insight* 7(1), 2001.

14) UCP600 제3조

15) 비은행금융기관의 확인에 대하여는 *Barclays Banks v. Mercantile National Bank*, 339 F. Supp.457(N.D. Georgia 1972) aff'd, 481 F.2d 1224(5th Cir. 1973)참조

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UCP600 제1조에 따라 통일규칙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거나 배제할 수 있으므로 비은행금융기관도 신용장을 확인할 수 있다.<sup>16)</sup>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신용장규정<sup>17)</sup>이 확인은행을 개설은행과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확인은행이 선의로 행동하였을 때 수익자의 사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18)</sup>

### 1) 수익자에 대한 의무

UCP600에서는 신용장에 확인을 하였을 경우 확인은행은 수익자가 확인은행 또는 다른 지정은행에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결제 또는 매입을 하며, 다른 지정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은행을 대신하여 결제하거나 매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9)</sup> 또한 다른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서류를 확인은행에 제시하면 확인은행은 결제를 하여야 한다.<sup>20)</sup> UCP500에서는 확인은행의 다른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의무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확인은행은 단지 2차적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즉 개설은행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확인은행은 2차적 채무자가 아닌 1차적 채무자로서 행동하여야 하므로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서류가 자기 은행에 제시되었을 때 대금을 결제 또는 매입할 의무가 있다. 즉 확인은행의 지급의무는 개설은행의 지급의무와 독립적이다.

확인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지정은행인 경우에 수익자는 먼저 지정은행에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정은행이 지정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만 확인은행의 의무가 개시되기 때문으로 수익자가 지정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개설은행에 제시할 수 있는 개설은행의 입장과는 다르다. 21)

확인은행이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신용장조건과 일치한 것으로 보고,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였는데 개설은행에서 새로운 하자가 발견되어 대금지급이 거절된 경우 확인은행이 수익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신용장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UCP

16) James E. Byrne, UCP600: An analytical commenta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2010.

17)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LC Rules (2005) 제10조

18) James E. Byrne, International Letter of Credit Law and Practice, West, 2011, pp. 422.

19) ICC Opinion R.397(2000/01)에서 확인신용장에서 주 채무자는 확인은행이 되고, 상품공급에 대한 계약관계에서는 개설은행이 법적 채무자라고 결정하였다.(Matti S. Kurkela, Letter of Credit and Bank Guarantees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256-257.)

20) UCP600 제8조 c항

21) Peter Ellinger and Dora No,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Oxford and Portland, 2010, p. 116.

에서 은행이 서류 제시자에게 하자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대금지급을 금지할 수 없도록 별칙이 처음 부과된 것은 UCP290(1974)이다. UCP290(1974)에서는 이러한 별칙이 개설은행에만 적용되었고, 확인은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따라서 확인은행이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개설은행에서 발견되어 대금지급이 거절된 경우 수익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므로 확인은행은 수익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sup>22)</sup>

Harfield(1974)는 확인은행이 개설은행이 지급인인 어음을 매입한 경우 확인은행에게는 소구권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구권은 매입은행으로서의 역할에 기인하는 것이지 확인은행으로서의 역할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어음이 정당하게 지급거절된 경우 확인은행은 자신을 갖고 있는 어음으로 전자(어음의 전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이 부당한 경우 서류의 매도자에 대한 소구권은 확인은행의 확인에 따른 의무와 상쇄되어 확인은행은 소구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였다.<sup>23)</sup>

그리고 UCP400(1983)부터 서류 제시자에게 신용장통일규칙에 규정된 대금지급 거절 절차를 일정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확인은행에도 개설은행과 동일한 별칙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UCP600에서는 확인은행이 서류 접수 후 5은행영업일이 경과하면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익자 또는 다른 지정은행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sup>24)</sup>고 하였다.

## 2) 지정은행에 대한 의무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서류를 결제하거나 매입하고, 확인은행으로 서류를 송부한 지정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확인은행의 의무는 개설은행의 의무와 동일하다.

## 3) 개설은행에 대한 권리

UCP500에서 지정은행과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동일한 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UCP600은 개설은행이 지정은행에 대하여 상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확인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확인은행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통일규칙의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일부 지적<sup>25)</sup>도 있으나, 묵시적으

22) Megrah(1976)는 확인은행이 개설은행이 지급인인 환어음을 매입한 경우 개설은행에 대하여는 소구권이 없으나 사실 착오에 기인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수익자에게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H.C. Gutteridge, Maurice Me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 1976, p. 67.)

23) Henry Harfield, *Bank Credits and Acceptances*, Ronald Press Company, 1974, pp. 219-220.

24) UCP600 제16조 f항, Peter Ellinger and Dora Neo,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Hart Publishing, 2010. p. 194.

25) Kewei Wang, "In confirming bank a nominated bank?", *Documentary Credit Insight* 15(4). 2009.

로는 확인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 4) 확인은행 확약의 독립성

비록 UCP600 제8조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확인은행의 확약은 개설은행의 확약 및 확인은행의 대금상환 획득능력을 포함한 확인의 원인이 되는 기초 거래와 독립적이다. 이러한 원칙은 UCP600 제4조와 제5조, 제34조에 규정되어 있고, 다른 많은 조항에는 묵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을 근거로 하여 일치한 제시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없다.

확인은행 확약의 독립성에 관한 원칙은 개설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개설은행 확약의 독립성에 관한 ICC Opinion은 확인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기 전에 서류를 선지급하거나 매입하지 않은 다른 지정은행과 수익자에 대하여 확인은행은 사기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현지 법률에 따라 신용장에 따른 서류 위조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의 품질에 대한 문제는 신용장 사기가 되지 않는다.

United City Merchants(Investment) Ltd v. Royal Bank of Canada 사건<sup>27)</sup>에서 확인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계약관계는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관계와 동일하다고 결정되었다. Lord Diplock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확인은행에 제시된 수익자의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확인은행은 수입상에 의해서 수출상의 계약위반행위가 제기되었다더라도 결제하여야 한다. 즉 서류에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확인은행의 지급거절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더욱이 수익자가 아닌 자가 부정확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선적기일이 12월 15일인 신용장에서 확인은행에 제시된 선하증권에는 실제 선적일자인 12월 16일이 기재되지 않고, 12월 15일로 허위 기재되었다.

상품에 관련된 분쟁은 수익자의 대금 수취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확인은행과 수익자간의 이와 같은 일반적인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즉 수익자가 대금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실이 아닌 중대한 것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사기로서 확인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Xuehui, Wang, “A confirming bank is a special nominated bank”, *Documentary Credit Insight* 15(4), 2009.

UCP600 제7조 c항에서는 개설은행의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UCP600 제12조 a항에서는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6) Erdemol, Haluk, “Reimbursing the confirming bank under SWIFT Field 41a”, *Documentary Credit Insight* 16(1), 2010.

27) United City Merchants(Investment) Ltd v. Royal Bank of Canada(1982) 2 All ER 720( ICC, Trade Finance Fraud, 2002, p. 51.)



UCP600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확인은행은 대금상환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정은행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sup>28)</sup>

#### 4. 무권 확인

많은 기업은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국의 국별 위험 또는 대금지급위험을 커버하기 위하여 신용장 확인을 원한다. 그러나 어떤 신용장 개설은행은 자기 은행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그들이 개설한 신용장에 다른 은행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꺼린다.<sup>29)</sup> 따라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무권 확인(silent confirmation)”<sup>30)</sup>이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은행이 제공하고 있다. 어떤 은행은 이것을 “payment guarantee” 또는 “commitment to purchase”라고 부르는데, 본질적으로는 무권 확인은행은 일단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묵시적 확인은행과 수익자간의 소구권 없는 파인랜싱과 비슷하다.

수출상의 거래은행이 개설은행의 지시 또는 수권 없이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확정적 지급확약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자는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소구권 없이 “즉시 지급” 또는 “지급약정”을 얻게 된다. 신용장통일규칙에는 무권 확인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것은 무권 확인은행과 신용장 수익자와의 신용장 계약의 범위 밖에서 하는 순수한 별도의 계약이다. 영국법과 홍콩법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계약의 원칙을 따른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권 확인은행은 UCP600 제8조에 의거, 확인은행의 수권을 받은 확인은행의 권리를 얻을 수 없다.

지정은행이 아닌 무권 확인은행의 가장 큰 위험은 이 은행이 수출자의 서류를 소구권 없이 매입하였는데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정은행이 아닌 무권 확인은행은 신용장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개설은행에 의해서 확인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개설은행이 부당하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개설은행 또는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신용장거래에서는 은행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통지은행이 또한

28) There are no guidelines on this in the UCP, and the expectation is that the issuing bank will seek to uphold the principles outlined in the UCP and preserve the relationship that exists between the banks. This is part of the correspondent banking relationship between the banks.(ICC Opinion R.519)

29) 중국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확인 요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 묵시적 확인에 관한 ICC Opinion은 1980년 R.68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지정은행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정은행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 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상환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sup>31)</sup> 따라서 지정은행이 무권 확인을 하게 되면 무권 확인은행임을 내세우지 않고 지정은행으로서 개설은행에 신용장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Banco Santander v. Banque Paribas* 사건<sup>32)</sup>에서 연지급신용장에는 인수신용장과 달리 환어음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선지급 금융을 제공한 지정은행은 만기 이전에 수익자의 사기가 드러난 경우 지정은행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UCP600에서는 연지급신용장도 인수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선지급 지정은행이 수익자의 사기로부터 보호받는다고 규정하게 되었다.<sup>33)</sup> UCP600의 이 규정은 미국의 *Fortis Bank (Nederland) N.V. 대 Abu Dhabi Islamic Bank* 사건<sup>34)</sup>에서 인정되었다.<sup>35)</sup>

마지막으로, 무권 확인은행은 수익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가 인수하거나 제외할 위험의 유형을 상세히 기재한 약정을 수익자와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Ⅲ. 판례 분석

확인은행이 관련된 한국 판례와 미국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유바프은행 대 국민은행 사건<sup>36)</sup>

##### 1) 사건의 개요

국민은행은 베이루트 소재 은행이 개설한 연지급신용장에 따라 수출상으로부터 서류를 제시받고 일부금액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을 보류하였다. 그 후 국민은행은 확인은행인 유바프은행에 서류의 재매입을 의뢰하였다. 유바프은행은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였는데,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인수하고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31) UCP600 제7조 c항

32) [2000] 1 All ER (Comm) 776 [England]

33) UCP600 제7조 c항, 제8조 c항

34) (N.Y. Sup. Ct. Aug. 26, 2010) [USA] 2010 LC CASE SUMMARIES No. 601948/09

35) Jim Barnes, "UCP 600 and Banco Santander", *Documentary Credit Insight*, 17(2), 2011.

36)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이에 따라 유바프은행은 국민은행에 할인수수료를 공제한 신용장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개설은행은 2005년 2월 2일 유바프은행에 “개설은행이 제시 받은 선하증권의 물품이 선적되지 않았으므로 수익자에게 이 사건의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2005년 2월 22일 개설은행은 “이 사건의 신용장거래는 선적서류 위조에 의한 사기거래이므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수익자는 서류 위조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 2) 당사자의 주장

### (1) 유바프은행의 주장

국민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선적서류를 매입한 후 자기 은행에 재매입의뢰를 하여 재매입약정에 따라 선적서류를 재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1,493,798달러를 지급하였으나, 개설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 거래는 선적서류 위조에 의한 사기거래’라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 국민은행은 자기 은행에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위 재매입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2) 국민은행의 주장

① 유바프은행은 신용장의 확인은행으로서 개설은행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용장대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유바프은행이 국민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러한 확인은행 고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더욱이 이 거래에서는 환어음의 수수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원·피고 사이의 신용장거래에서는 수출환어음의 재매입에 관한 재매입약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② 국민은행이 유바프은행에게 선적서류의 재매입을 의뢰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위 수출환어음 매입(추심)신청서에는 ‘소구권 없음(without recourse)’이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고, 이는 유바프은행이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른 소구권을 포기하여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효력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결국 국민은행에게는 유바프은행이 주장한 재매입대금의 반환책임이 없다.

## 3) 판결내용

(1) 유바프은행의 국민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의 지급은 유바프은행의 신용장 확인은행 또는 지급은행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재매입은행의 지위에서 한 것이다.

연지급신용장이므로, 유바프은행이 확인은행 또는 연지급은행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만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미리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신용장과 같이 매입은행이 특정되어 있는 매입제한 신용장의 경우, 수출상으로부터 1차적으로 서류를 매입한 비지정은행은 반드시 지정은행 앞으로 재매입을 의뢰하여야 한다.

국민은행이 유바프은행에게 선적서류와 함께 발송한 수출환어음매입(추심)신청서에도 재매입구분란에 ‘당행 의뢰 RENEGO’라고 전산 입력되어 있어 유바프은행의 재매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바프은행은 신용장대금 전액이 아니라, 통상의 재매입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정의 할인수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 국민은행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바프은행이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것은 유바프은행과 국민은행 사이에 2003년 7월 15일 체결된 재매입약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신용장은 유바프은행만 매입은행으로 지정된 매입제한신용장이므로,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상의 서류를 매입할 수 있는 수권을 받지 않은 국민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 상의 서류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매입이 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 참조), 이 경우 확인은행인 유바프은행은 수익자에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유바프은행이 확인은행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2) 이 사건과 같이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아 환어음이 아닌 선적서류만으로 재매입된 경우에도 재매입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보면 이 사건 재매입약정 당시 작성된 약정서에서도 재매입의 대상을 ‘수출환어음 등’이라고 표기하고 있어 환어음에 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이 발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연지급신용장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선적서류가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거래되고 있는 점(환어음 역시 광의의 선적서류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매입약정은 환어음은 물론 그에 갈음한 선적서류의 재매입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4) 평석

##### (1) 확인은행의 책임

이 사건에서는 유바프은행의 책임을 확인은행이 아닌 재매입은행의 지위에서 판결을 내렸다. 유바프은행을 확인은행으로 보더라도 수익자가 서류를 위조한 사기가 명백한 경우에는

확인은행은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추후에 거절할 수 있다. 여기서 국민은행은 비지정은행이므로 수익자의 추심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신용장거래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신용장거래에서 서류 위조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수익자의 서류가 위조되었다면 확인은행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다. 이 판결에서는 재매입은행인 확인은행은 재매입은행의 지위에서 매입은행에 이미 지급한 신용장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 (2) 수익자 또는 비지정은행의 개설은행 앞 직접 서류 제시

판결에서는 수익자 또는 비지정은행은 개설은행 앞으로 직접 서류를 제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UCP600 제6조 a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은행도 지정은행에 해당되므로 수익자 또는 비지정매입은행은 개설은행 앞으로 직접 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

비지정은행의 서류(어음) 매입은 신용장거래와는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어음 할인과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외국환어음이라고 하여 어음법상 어떤 특별한 증권은 아니고 일반적인 외국환어음으로서 전적으로 어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이 특정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어음 자체에 지정은행 이외의 자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비지정은행이 자기의 위험과 계산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다.

이 경우 비지정은행이 갖는 권리의 법률적 성격에 대하여 “비지정은행은 매도인이 갖고 있는 권리의 양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에 의해서 자기 은행이 스스로 독립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함으로써 “비지정매입은행이 신용장의 수익자가 된다”는 학설도 있다.<sup>37)</sup>

### (3) 확인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청구권

확인은행이 이미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수익자의 사기를 이유로 개설은행이 확인은행에 대금지급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신용장에서 수익자의 사기가 있는 경우 확인은행이 적시에 법원으로부터 지급금지명령을 받지 못하거나, 은행이 신용장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확인은행에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sup>38)</sup> 이 사례에서 유바프은행이 개설은행에 상환청구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은 이 신용장이 연지급신용장이어서 UCP500에서는 인수신용장과는 달리 연지급신용장에서는 지정은행이 선지급한 경우에 보호

37) 김한수·박세운, 『무역·외환사고 예방 및 사후대책』, 국제금융연구원, 1992, p. 471.

38) Jim Barnes, The L/C fraud/abuse exception, *Documentary Credit Insight* 16(4), 2010.

를 받지 못한다고 기술한 영국 판례(Banco Santander v. Banque Paribas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2.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hip and Export 대 Citibank 사건<sup>39)</sup>

### 1) 사건의 개요

신용장 수익자가 확인은행에 서류를 제시하였는데 두 서류에 하자가 있었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에 하자 용인(waiver)을 요청하였고,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하자를 용인 받았다. 확인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였고,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계좌에서 신용장대금을 차기하였다. 11월 11일에 개설은행은 서류를 받았는데, 12월 2일에 추가적인 하자를 확인은행에 통지하였다. 개설의뢰인 또한 이의를 제기하고, 수익자가 사기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상품은 개설의뢰인에게 인도되지 않았다. 개설의뢰인은 확인은행의 부당지급과 태만한 제시 등의 잘못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2) 판결내용

즉결재판 후 판사는 개설의뢰인은 확인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확인은행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 3) 평석

#### (1) 신용장통일규칙의 역할

법원은 이 사건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에 대한 규정인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Alaska Textile Co. v. Chase Manhattan Bank, 982 F.2d 813, 816 (2d Cir. 1992)). 비록 신용장통일규칙이 법률은 아니지만 개설은행이 일반적으로 이것을 신용장에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용장에 적용이 된다(Semetex Corp. v. UBAF Arab American Bank, 853 F. Supp. 759, 769 (S.D.N.Y. 1994), aff'd 51 F.3d 13 (2d Cir. 1995)). 즉 신용장통일규칙은 당사자간 계약에 적용되는 사법으로 볼 수 있다.

39) 2000 U.S. Dist. LEXIS 4076 (S.D.N.Y. 31 March 2000) [U.S.A]

**(2) 확인은행과 개설의뢰인 간의 관계**

UCP500 제3조 a항을 적용하여 법원은 개설의뢰인이 확인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신용장거래의 독립성의 원칙이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간의 관계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확인은행은 개설의뢰인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개설은행과 거래를 한 것이다. 그러나 UCP500 제18조 b항은 개설은행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통지 지연**

법원은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을 대신하여 확인은행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설은행은 서류 접수 후 13일 만에 확인은행에 지급거절을 통지하였으므로 지급거절할 권리를 상실하였다.

## IV. 실무상 유의점

기술한 판례와 신용장 실무에서 신용장 확인과 관련된 실무상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1. 분할확인(partial confirmation)

확인은 확인은행과 수익자 간의 별개의 계약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상호 수락한다면 어떤 조건이든 합의할 수 있다. 생산라인 구입과 관련된 신용장에서는 기계가 인도되었을 때 신용장금액의 9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계 성능을 테스트한 후 지급한다는 것이다. 기계 성능을 테스트하는 데에는 장시간이 걸리므로 어떤 확인은행은 신용장금액의 90%만 확인을 하려고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UCP600 제10조 b항에 따라 확인은행은 조건변경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확인은행이 신용장금액의 10% 증액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신용장 확인은 총신용장금액의 90%가 된다.

## 2. 개설은행이 용인한 하자 서류에 대한 확인은행의 책임

개설은행이 용인한 하자 있는 서류에 대한 확인은행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는 매우 논란이 많았다. 기본적으로 확인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한 서류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용장 확인은 개설은행의 지급위험과 국별 위험을 커버하는 것이다. 불일치하는 서류에 대해 추후에 개설은행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 확인은행에는 추가적인 부담도 발생하지 않고 위험부담도 변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1978년 ICC 은행위원회는 개설은행이 일단 하자 있는 서류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지급위험과 국별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확인은행의 책임은 존속된다고 결정하였다.<sup>40)</sup>

그러나 이 ICC 의견은 ICC Opinion(R.520)<sup>41)</sup>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번복되었다.

“서류가 유효기일 이내에 확인은행에 제시되었는데 확인은행이 하자를 발견하고, UCP에 따른 지급거절 통지를 하였다면 확인은행의 약정은 (수익자가 신용장의 제한시간 이내에 하자를 보완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은행이 서류를 개설은행에 approval basis로 송부하였는데 개설은행이 하자를 용인한 경우 확인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거절 통지를 보낼 때 달리 명시하지 않았다면 확인은행은 더 이상 지급 의무를 지지 않는다. 확인은행은 하자 있는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달리 명시하지 않았다면 확인은행의 의무는 종료된 것이다. 개설은행이 하자를 용인하였다고 하여 확인은행의 의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ICC 의견은 확인은행의 부담을 경감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 의견은 상업적으로 호소력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익자가 이 접근방법이 그들에게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설은행이 하자를 용인하였다고 하여 확인은행이 추가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onfirmed on (일자)”만 표시된 확인방(correction chop)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인서(confirmation letter)에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확인은행의 지급의무가 어떤 상황에서 종료되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3. 기한부 매입신용장에서의 확인은행의 의무

지정은행이 기한부신용장을 매입하지 않을 때 확인은행은 결제 또는 매입할 의무를 부담

40) Meeting on 14 Apr. 1978 ICC Documents 470/328, 470/330) R.14.

41) Official Opinion R520 / TA543 rev2 - Unpublished Opinion 1995-2004.



하는가? UCP600 제7조 (a)(i)에서는 신용장이 어떤 지정은행의 매입에 이용될 수 있는데 지정은행이 매입을 하지 않았을 때에만 개설은행이 결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만기에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만기 이전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매입은행은 수익자의 권리를 매입하는 제3자로서 그 후에 개설은행에 상환을 청구한다.

그러나 UCP600 제8조 (a)(i)에서는 제7조 (a)(i)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e confirming bank must negotiate, without recourse,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negotiation with the confirming bank.”

신용장이 확인은행에 의해 매입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일반적으로 환어음을 요구하는데, 환어음을 요구한다면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요구함) 확인은행(또한 지정은행)은 기한부신용장이더라도 소구권 없이 제시된 서류를 매입(즉 수익자에게 즉시 대금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한부신용장이 확인은행에 매입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수익자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즉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확인은행은 즉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확인은행 입장에서는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향이 없다면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인 매입신용장을 확인하지 말아야 한다.

#### 4. 확인은행과 지정은행

“확인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서류를 반드시 확인은행에 제시하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UCP600에서는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함으로써 이 점에 대하여 명확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 UCP600 제8조 (a)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Provided that the stipulated documents are presented to the confirming bank or to any other bank and that they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the confirming bank must honour, if...”

UCP600 제8조 c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confirming bank undertakes to reimburse another nominated bank that has honoured or negotiated a complying presentation and forwarded the documents to the confirming bank.”

UCP600 제15조 c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When a nominated bank determines that a presentation is complying and honours or negotiates, it must forward the documents to the confirming bank or issuing bank.”

확인에서 명백하게 서류를 확인은행에 제시할 것을 명시하였다면, 서류가 확인은행에 제시되지 않았다면 확인은행의 지급의무는 종료된다. 그러나 확인에서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제시자는 서류를 개설은행에 제시할 수도 있고, 확인은행에 제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일치하는 제시가 되었다면 개설은행에 대한 제시는 확인은행을 구속한다.

확인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지정은행이라면 서류가 확인은행에 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은행은 확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5. “May Add”의 의미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SWIFT로 통지 요청할 때 MT700의 field 49에 “May Add”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통지은행이 수익자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으면 통지은행이 확인을 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할 때 수익자가 확인 요청을 하지 않고 나중의 어떤 시점에 확인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통지은행이 통지 요청을 받은 시점에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추후 수익자의 확인 요청이 있어 확인할 의향이 있다면 개설은행 앞으로 확인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통지은행은 수익자의 확인 요청이 있더라도 확인할 의향이 없다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sup>42)</sup>

## 6. 일치성 여부에 대한 분쟁 발생 위험

개설은행은 확인은행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확인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흔히 개설은행과 확인은행간 서류의 일치성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개설은행이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고, 개설은행 소재국에서의 소송은 확인은행에 상당히 불리하다. 이것이 확인은행이 확인을 함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다.<sup>43)</sup>

한편으로 수익자는 확인은행의 확인이 있다고 하여 대금회수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흔히 수익자와 확인은행 간에 서류 일치성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다. 확인은행이 부당하게 서류 불일치를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하면 수익자로서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수익자로서 신용장거래에서 대금회수의 안전성이 가장 높은 것은 상환은행의 상환확약을 받아 두는 것이다. 상환은행은 상환확약을 하는 시점으로부터 상환청구에 대하여 결

42) Official Opinion TA698rev - Unpublished UCP 600.

43) Gary Collyer, The Guide to Documentary Credits, Institute of Financial Services, 2008, pp. 433.

제를 하여야 하는 취소 불능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sup>44)</sup> 따라서 수익자는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과는 서류 일치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 휘말릴 일이 없다. 상환은행은 상환확약을 하였다면 개설은행과 상환청구은행과 서류상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상환청구에 응해야 한다.<sup>45)</sup>

## 7. 확인 수권 은행의 확인 거절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구에 따라 다른 은행에 신용장 통지를 요청하면서 확인을 추가할 것을 수권하였는데, 확인을 의뢰 받은 은행은 확인을 하지 않고, 단순히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 은행이 확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개설은행과 확인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이미 협정된 확인한도를 초과하였다거나, 확인한도 초과를 허용할 여유가 없거나, 또는 협정된 확인액을 커버할 금액이 예탁되지 않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개설은행은 지시대로 행동하지 않은 다른 은행을 선택한 것과 무확인신용장이 통지된 것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수입상에 대하여 면책이 되느냐가 문제가 된다.

매도자와 매입자간 확인신용장에 의해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매도자는 신용장에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매입자의 계약위반이라고 지적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수입상은 개설은행에 확인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확인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당황하여 개설은행에 문의할 것이다. 이 경우 개설은행은 UCP600 제37조 b항<sup>46)</sup>에 따라 면책이 되는가?

신용장 확인이란 확인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여신행위이므로, 먼저 두 은행 간에 확인에 대한 여신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설은행이 환거래은행에 확인을 의뢰할 때에는 이 여신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개설은행이 확인을 의뢰받은 은행과 체결한 확인조건을 위반하지 않고 확인을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이 어떤 이유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개설은행은 면책이 된다. 그러나 개설은행이 확인을 의뢰할 때 여신조건을 따르지 않았다면 개설은행의 과실 또는 태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개설은행은 면책되지 않는다.

어떤 은행이 다른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다른 은행이 그 지시를 정확하게 준수하

44) URR 725 제9조 g항.

45) ICC Official Opinion R.495.

46) UCP600 제37조 b항

A issuing bank or advising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should the instruction it transmits to another bank not be carried out, even if it has taken the initiative in the choice of that other bank.

지 않은 경우에 지시은행은 면책이 되는가? - 1933년 UCP82<sup>47)</sup>에서 규정한 것처럼 개설은행 자신의 과실이 있다면 면책이 되지 않는다. 은행 자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1951년 UCP151에도 남아 있었으나 1962년 개정 규칙인 UCP222에서는 당연한 것이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1974년 UCP290에 따른 ICC 의견<sup>48)</sup>에서는 개설은행에 태만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으로부터 확인을 의뢰받은 경우 환거래은행의 확인에 대한 credit line이 이미 초과했거나 약정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설은행은 임시 credit line를 설정 받거나 확인금액을 커버하는 자금을 환거래은행에 예탁하여 확인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개설의뢰인으로부터 확인수수료를 선납 받은 경우 이것은 개설은행의 부당이득이 된다.<sup>49)</sup>

## V. 결론

신용장 확인은 개설은행과 개설은행 소재국의 신용위험 및 외국법률 적용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개설은행의 요청과 수권에 따라 다른 은행, 주로 수익자 소재지 국가의 은행이 개설은행의 지급확약과 독립적으로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남미 등 개발도상국가와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통지은행인 우리나라 은행이 신용장에 확인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확인은행의 책임의 범위에 대한 문제로는 첫째, 수익자의 사기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확인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확인은행도 개설은행과 마찬가지로 수익자의 사기가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즉, 확인은행이 수익자의 서류 위조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확인은행에서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개설은행에서 발견한 경우 확인은행이 수익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1983년의 UCP400부터는 확인은행도 대금지급을 거절할 때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지급거절을 하지 않으면 서류 하자를 이유

47) UCP82(1933) 14조

Banks utilising the services of another bank assume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towards their principal (unless they themselves are at fault)...

48) Opinions 1975-79 R.17(p.30)... This immunity did not apply where the issuing bank been guilty of negligency.

49) 小峯 登, 『전계서』, p. 541.

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인은행에게는 수익자에 대한 소구권이 없다.

UCP500에서는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UCP600에서는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이 아닌 경우 확인은행이 서류를 심사할 수 없으므로 확인은행은 확인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UCP600에서는 개설은행의 확인은행에 대한 상환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묵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확인은행이 하자있는 서류를 제시받고 개설은행에 하자 용인을 요청한 후 개설은행이 하자를 용인하였다더라도 확인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ICC의 의견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확인은행은 수익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확인을 할 때 확인은행의 책임이 종료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입신용장에서 지정은행인 확인은행은 기한부신용장이더라도 수익자가 일치하는 제시를 하는 경우 즉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설은행이 환거래은행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개설은행이 신용장 확인에 따른 credit line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확인수수료를 지불한 개설의뢰인에게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에 규정된 은행에 대한 면책이 은행의 과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는 확인은행의 확약을 받는다고 하여 대금회수의 안정성이 100% 보장되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확인은행이 부당하게 서류상 하자를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가 대금회수의 안정성을 보다 높이는 방법은 상환은행의 상환확약을 받아 두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용복, “취소불능신용장의 확인과 확인은행의 채무에 대한 소고”, 「법경논총」, 1976.
- 김한수, 「사례해설 신용장통일규칙(ICC의 결정 및 의견)」, 육법사, 1988.
- 김한수·박세운, 「무역·외환사고 예방 및 사후대책」, 국제금융연구원, 1992.
- 박세운, 「ICC 은행간 화환신용장 대금상환 통일규칙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2011.
- 박원형·김동윤,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부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7권 4호, 2011.
- 이대우, “인수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의 상환청구권에 관한 사례연구”, 「국제상학」 제23권 4호, 2008.
- 이천수, “화환신용장하의 상환확약과 비채권확인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4권 2호, 1999.
- 이천수, “신용장거래에서 Silent Confirmation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7권 6호, 2004.
- 장흥훈, “화환신용장거래에서 확인은행의 법적 지위와 관계당사자에 대한 책임의 한계”, 「무역상무연구」 제13권 3호, 2000.
- 小峯 登, 「1974年 信用狀統一規則(上)」, 外國爲替貿易研究會, 1977.
- 李澤孝平, 「商業信用狀論」, 有斐閣, 1986.
- Barnes, Jim, “The L/C fraud/abuse exception”, *Documentary Credit Insight* 16(4), 2010.
- Barnes, Jim, “UCP 600 and Banco Santander”, *Documentary Credit Insight* 17(2), 2011.
- Byrne, James E., UCP600: An analytical commenta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2010.
- Byrne, James E., International Letter of Credit Law and Practice, West, 2011.
- Ellinger, Peter and Dora Neo,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Hart Publishing, 2010.
- Erdemol, Haluk, “Reimbursing the confirming bank under SWIFT Field 41a”, *Documentary Credit Insight* 16(1), 2010.
- Fung, King Tak, “Expert commentary”, *Documentary Credit Insight* 7(1), 2001.
- Fung, King Tak, UCP600 Legal Analysis and Case Studies, P.E.E.R. Consultancy Ltd, 2010.
- Gary Collyer, The Guide to Documentary Credits, Institute of Financial Services, 2008.
- Gutteridge, H.C. and Maurice Me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 1976.

- 
- Hartfield, Henry, *Bank Credits and Acceptance*, Ronald Press Company, 1974.
- ICC Commercial Crime Services, *Trade Finance Fraud*, 2002.
- Kurkela, Matti S., *Letter of Credit and Bank Guarantees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Levine, Ellen S., *Third-party interaction with letter of credit, A Practical Guide to Letter of Credit* edited by Charles E. Aster, Executive Enterprises Publications Co., Inc., 1990.
- Wang, Kewei, “In confirming bank a nominated bank?”, *Documentary Credit Insight* 15(4). 2009.
- Wang, Xuehui, “A confirming bank is a special nominated bank”, *Documentary Credit Insight* 15(4). 2009.
- Ward, W., *American Commercial Credits*, The Ronald Press Company, 1922.

## ABSTRACT

### The Status and Responsibility of the Confirming Bank under UCP600

Sae-Woon, Park\* · Sun-Hae, Lee\*\*

The confirming bank undertakes to make payment to the beneficiary, provided that a complying presentation is made and complies with its confirmation. In case L/C fraud is evident, though, the confirming bank as well as the issuing bank does not have the obligation to make payment. That is, the confirming bank does not take the risks involving documentary fraud. The confirming bank cannot exercise the right to recourse toward the beneficiary or the nominated bank when the issuing bank finds the discrepancies which the confirming bank has not noticed. This is because under UCP600, the issuing bank or the confirming bank cannot refuse to make payment with the cause of documentary discrepancy after 5 banking days following the presentation of documents. Even if the issuing bank accepts the discrepant documents following the confirming bank's request to do so, the confirming bank does not have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nfirmation. When under Usance Negotiation Credit, the confirming bank acts as the nominated bank, the confirming bank should make payment in no time if the beneficiary presents complying documents. Therefore, unless the confirming bank intends to make immediate payment, they should consider using Deferred Payment or Acceptance L/C in Usance Credit.

It is also safer for the beneficiary to have the reimbursing bank's undertaking to the reimbursement than just have confirmation of the credit because in the latter case they may not have full payment due to disputes regarding discrepancies of the documents even if they have confirmation of the credit.

**Key Words** : confirming bank, nominated bank, silent confirmation

---

\* Professor of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Lecturer of Changwon National University